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10. 11 선고 2016가단381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신의산업개발

변론 종결2016. 9. 27.

판결 선고2016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대 18835.6m² 중 18835.6분의 79.8917 지분에 관하여 2008. 1. 14. 안성시 B에 있는 C아파트 203동 2302호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손진홍

별지